

2022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

1.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제5호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제5호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 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분		이수횟수	제외대상	비고
사범대학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4회 이상		2022학년도 이전 편입학자는 2회 이상 이수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2회 이상	21. 2. 9. 기준 6학기 이상 이수자	
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교육대학원		2회 이상	21. 2. 9. 기준 3학기 이상 이수자	

3.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

가. 이수 방법

: 교육부에서 배포한 성인지 교육 콘텐츠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과 학교 인권센터에서 실시하는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 및 권장교육(학생) - 폭력예방교육’ 을 모두 이수할 시 성적으로 인정

